

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 
등에 관한 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2022. 2. 11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555
----------	-----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. 28. 강남구청장(기획예산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2. 2. 11.)  
“수정가결”

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경제국장 : 은승일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1.13.)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,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의견제출 제외대상 및 의견제출 방법 등(안 제4조~제6조)
- 의견제출 검토·통보 및 의견의 반영(안 제7조, 제8조)
-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(안 제9조, 제10조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

-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 전부개정)

제20조(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)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,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○ 기 타

-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입법예고(2022. 1. 5. ~ 2022. 1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-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시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제4항<sup>1)</sup>에 따른 위임조례로 그동안 규칙이 법

#### 1) 지방자치법

제20조(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)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령과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규칙의 제정 및 개정·폐지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이 있었음.

- 「지방자치법」을 전부개정하면서 규칙을 제정 및 개정·폐지할 때 「행정절차법」 제44조<sup>2)</sup>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0조에 따라 입법예고시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「청원법」 제5조<sup>3)</sup>에 따라 국민이 제한적·수동적 참여는 가능했으나 제정조례안에서는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과 관련한 사항에

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,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29조(규칙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## 2) 행정절차법

**제44조(의견제출 및 처리)**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, 의견제출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법제업무 운영규정

**제18조(제출의견의 처리)**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(전자문서 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)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,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자치법규안 입법예고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, 인터넷, 방송,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, 제출의견 접수기관, 의견제출 기간,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(신·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)을 게재하여야 한다.

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3) 청원법

**제5조(청원사항)**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.

1. 피해의 구제

2. 공무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

3. 법률·명령·조례·규칙 등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

4.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

5.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한정하여 입법예고 기간이 아니어도 평상시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음 3개 법령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람.

관계법령	지방자치법	행정절차법	청원법
대상	주민	누구든지	국민
내용	규칙	조례·규칙	청원사항
제출시기	의견제출 사유발생시	입법예고 시	청원 사유발생시
제출기관	집행기관	입법예고 기관	지방자치단체

- 한편, 원칙적으로 내부 행정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단체장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으므로 법령·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규칙이 조례에 비해 의회의 통제 영향이 적은 바, 조례로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확대·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안 제10조 개정조례 중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의견은.
-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폐지 여부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재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.

#### 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#### 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
#### 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 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 
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

## 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제555호

제안일자 : 2022.2.11.

제안자 : 행정재경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일부 인용 조항의 조 번호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2. 수정주요내용

- 의견제출서 보완 및 검토 관련 인용 조항의 조 번호 수정(안 제6조, 제7조)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 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“제6조제3항” 을 “제5조제3항” 으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제6조” 를 “제5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 
중 “제7조제1항” 을 “제6조제1항” 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6조(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) ①                     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(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인”이라 한다)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)                     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소관 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.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6조(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) ①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제5조제3항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7조(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)                      ① 제5조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제6조제1항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④ (원안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55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. 28.  
제출자 : 강남구청장  
제출부서 : 기획예산과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1.13.시행)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,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의견제출 제외대상 및 의견제출 방법 등 (안 제4조~제6조)
- 라. 의견제출 검토·통보 및 의견의 반영 (안 제7조, 제8조)
- 마.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준수의 의무 (안 제9조,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



(1) 「지방자치법(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 전부개정)」

제20조(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)

-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-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,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22. 1. 5. ~ 2022. 1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

-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규칙”이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.
2. “주민”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.
3. “소관 부서”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(이하 “의견제출”이라 한다)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.

제4조(의견제출 제외 대상)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

2.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

3.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

제5조(의견제출 방법)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(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.

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한다.

제6조(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)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(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인”이라 한다)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,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제7조(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)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소관 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.

② 구청장은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 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.

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

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.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

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

2.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

제8조(의견의 반영)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차별대우 등 금지)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비밀 준수의 의무 등)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(앞면)

##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제출서

의견제출인  ※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표시,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뒷면 사용	성명	[    ] 대표자 ※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√ 표시	
	주소		
	전화번호	(휴대전화)	(자택)
	전자우편		
공동 의견제출	[    ] 해당	[    ] 해당되지 않음	공동 의견제출 인원수: 총    명
규칙명  ※ 규칙이 여러 건인 경우 의견제출서는 건별로 작성			
의견  ※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			
참고자료  ※ 필요한 경우 제출,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			

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

[별지 제1호서식] (뒷면)

## 의견제출인 명부

※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작성

연 번	성 명	주 소	연락처 (휴대전화)	서명 또는 날인	서명일	비 고

### 작성방법

1. "성명"란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.
2. "주소"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, 상세주소(동번호, 호수 또는 층수)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.
3. "서명 또는 날인"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.
4.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, "비고"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.

##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제출 검토 결과서

귀하

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규칙명	
제출의견	
검토내용	수용여부, 검토 생략 사유 등 작성

○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 (02-3423-0000)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0조(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)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,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  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
### 3. 미첨부 사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1.13.시행)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,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# 4. 작성자

- 기획예산과 행정7급 차경미 (02-3423-5483)